

우리들의 시회



시회의회장 (시청본청사내)



교토시회 마스코트 캐릭터

마타기치 · 마타린느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토시회」를 소개합니다.

교토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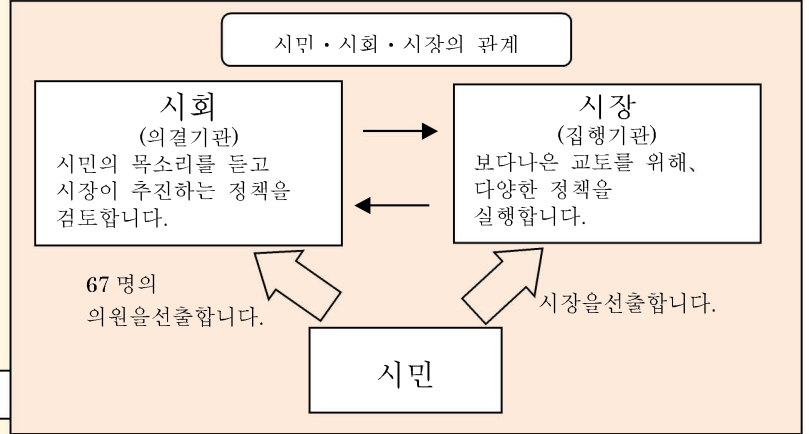
시 회 의 역 할

교토시에서는 복지, 교육, 도로·공원의 정비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 대표자로서 **사회 의원**과 **시장**을 직접 선출하여 시정의 운영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원 대표제】

사회는 조례안 등 시정에 관해 다양한 심의를 실시하고, 시로서의 의의나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은 사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실제로 추진하는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시정이 적정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와 시장은 독립·대등하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며 서로 협력·견제하면서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시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의 의회를 「시의회」라고 일컫지만 교토시에서는 의회가 시작된 메이지 시대부터 이미 사용해 온 「**사회**」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회 의 주 요 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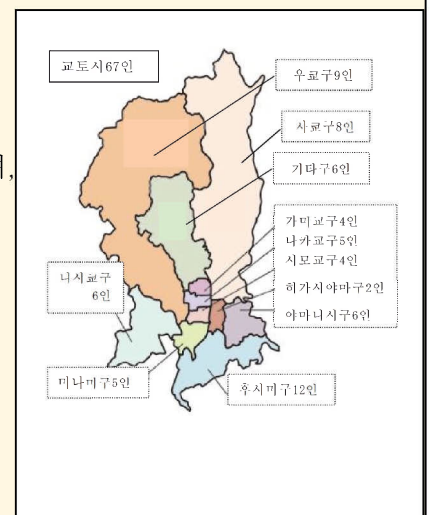
사회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 **의결권**
 사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 결정, 결산 인정, 중요한 계약 체결 등을 의결하고, 시로서 의의 결정 등을 시행합니다.
- **선거권과 동의권**
 의장·부의장 및 선거 관리위원 등을 선거합니다.
 또한, 시장이 부시장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동의를 부여합니다.
- **검사권·감사 청구권**
 시의 사무에 관한 서류나 계산서를 검열하는 등, 사무 관리, 의결 집행 및 출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권**
 시의 사무를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자의 출두와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권**
 시의 공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국회나 관계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진정 수리권**
 시정에 대한 요망 등,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진정을 수리합니다.

시 회 의 구 성

사회는 시민 여러분이 선거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 **의원**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에 매진합니다. 또한 교토 사회의 의원수는 67 명이며,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각 선거구별 의원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 **의장·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로 뽑힙니다. 의장은 사회의 대표이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사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부재시 의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행합니다.
- **회파**
 정치적으로 같은 사고방식과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만드는 사회내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교토 사회에서는 협의 단체로서의 회파 결성은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합니다.



시 회 의 운 영

교토 시회에서는 2015 년도부터 정기회의의 횟수를 연 1 회로 「연중의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 1 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대체로 1 년간의 회기 (의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를 정한 후에, 회기 중에는 집중적으로 본 회의와 위원회를 열어 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기간 (연 4 회 : 5 월, 9 월 ~ 10 월, 11 월 ~ 12 월, 2 월 ~ 3 월) 을 정기적으로 설치하고 긴급 의안 등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심의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중에는 심의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위탁 사건이나 청원 등 심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정의 보고 청취,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나 시찰을 시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

전 의원이 모여서 여는 회의로 의안의 가부 등에 대해서 시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본회의장

○ 위원회

본 회의에서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인수의 의원들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안 등에 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실

◇ 상임위원회

상설 위원회로 조례 등의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시의 사무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소방 위원회 (13 명)	환경복지 위원회 (13 명)	문화교육어린이 젊은이 지원 위원회 (14 명)	지역활성화 위원회 (14 명)	산업교통수도 위원회 (13 명)
시의 계획, 제정, 세금,방재,소방 등	환경, 쓰레기, 복지, 의료 등	문화,스포츠, 시민생활,육아, 교육 등	도시계획, 경관, 도로, 공원 등	관광,상공업,농림업, 시버스, 지하철, 수도, 하수도 등

◇ 특별위원회

특정의 문제를 심사·조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성격상 그 문제가 종료될때까지 존속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67 명), 제 1 ~ 3 분과회(22 ~ 23 명)를 설치하고 심사를 실시합니다.

◇ 시회운영위원회

시회내부의 연락 교섭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사운영을 비롯해 회의의 규칙, 의장의 자문사항, 기타 시회의 운영에 대해 협의합니다.

시 회 의 방 청 등

○ 방청 (본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시장총괄질의))

시회의 본회의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시장총괄질의) 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맹도건·개조건·청도건 동반 가능) . 개회 1 시간 전부터 시청 본청사 1 층 청사 안내소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관해서는 5 일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방청석에서 수화 통역을 실시합니다.

○ 모니터 방영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질의 모습은 시회 모니터 시청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맹도건·개조건·청도건 동반 가능) . 개회 1 시간 전부터, 시청 본청사 2 층의 시회 접수처에서 선착순으로 시청권을 교부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 인터넷 의회 중계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은 시회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및 녹화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중계

본회의에서의 각 회파의 대표 질문(질의)의 모습을 KBS 교토에서 수화 통역과 함께 생중계를 합니다.

○ 구청·지소에서의 DVD 방영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청·지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시장총괄질의) 의 DVD 방영을 실시 (시장총괄질의 약 5 일후부터 1 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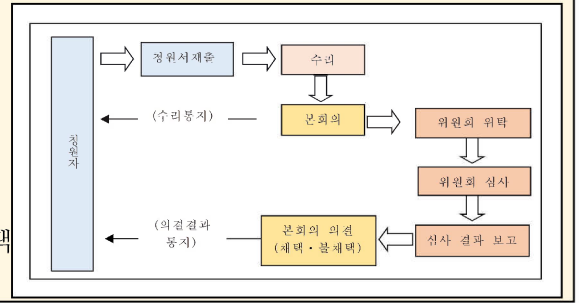
청원·진정

시민 여러분들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요망 등에 대해서 청원이나 진정으로 시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소개가 있는 것을 청원, 없는 것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 중,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장에 통지하고 요망등의 실현을 요청합니다.

단, 진정에 대해서는 의원의 소개가 필요 없지만 채택·불채택의결은 행하지 않습니다.



시회의 홍보·정보공개 등

○ 시회 소식 등의 간행물

시민 여러분께 시회의 활동을 알리고, 시회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토 시회 소식」과 각종 간행물 (전단지, 팸플릿 등)의 발행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 시회 홈페이지

시회의 역할이나 구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과 더불어, 회의의 일정이나 심의결과, 위원회의 활동등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기록, 정부 활동비에 관한 집행상황과 수지보고서 등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시회 도서·정보실 (시청 본청사 2층)

의원의 시정 기타 조사연구를 위해 설치 되었으며, 관보 및 정부 간행물, 교토시 및 교토부 간행물, 도서, 신문, 잡지 및 각종 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본회의나 위원회의 기록과 각종서류, 의원 자산 등에 관한 보고서, 정부 활동비에 관한 보고서와 영수증에 대해서는 시회 도서·정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토시회 기본 조례

교토시회에서는 2014년 3월, 교토시회의 「의회 기본 조례」인 교토시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회나 의원이 의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념과 원칙·제도 등 기본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 시회와 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 전 의원이 시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목표 방향성을 공통으로 인식한다.
- 시회 개혁 방안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 다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 시민 여러분이 맡겨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생활의 향상과 교토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조례의 특징

- 「교토 특유의 자치 역사」에 주목하고, 「전문」에서 교토다움을 표현
- 시장 등에 관한 감시기능 강화, 정책 입안과 정책 제안의 활성화를 규정
- 시민 여러분에게 열린 시회가 되는 것을 중시
- 대학이 많은 교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전문적인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을 규정



〒604-8571 교토시 나카교구 테라마치도오리 오이케아가루카미혼노지마에초 488
교토시회사무국 (시청 본청사 2층)

총무과 (서부, 본회의 방청) 전화 075(222)3700 FAX 075(222)3713

의사과 (의사운영, 청원·진정 접수) 전화 075(222)3703

※ 3과 공통

조사과 (조사, 법제, 홍보) 전화 075(222)3697



(2023년 6월 개정)